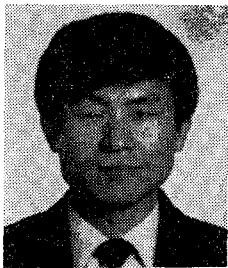


論壇解説

日本半導體칩 保護法解説



許 擦 續

〈特許廳 審査官〉

◎ 目 次 ◎

1. 머리말
2. 日本半導體칩 保護法의 構成
3. 0| 法의 目的
4. 語句의 定義
5. 回路配置 利用權의 設定登錄
6. 回路配置 利用權
7. 權利侵害
8. 補償金
9. 指定登錄機關
10. 附 則
11. 맷는 말

〈이번 號에 全載〉

1. 머리말

半導體 集積回路(半導體칩)의 回路配置(Layout으로

서 回路素子 및 도선의 配置를 말한다)의 模倣을 금지하여, 回路配置를 開發者를 違질히 保護하기 위해서 1984년 11월 美國은 半導體 칩 保護法을 制定하였다.

美國이 이와같이 半導體 칩 保護法을 制定함에 따라 半導體 산업에 있어서 선진국인 日本도 이에 대응하여 半導體 칩 保護法 制定을 위하여, 1984년 10월 통상산업대신의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의 정보산업부회에 「半導體 칩에 관한 법제문제 검토 소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 위원회가 1985년 1월 제출한 보고서에 따라,立法작업이 즉각 추진되어 “半導體 集積回路의 配置設計에 관한 法律案”이 日本議會에 제출되어 1985년 5월 31일 통과되었다.

이렇게하여 制定된 日本 半導體 칩 保護法에 관하여 日本 通產 產業省 기계정보 산업국 半導體 칩 保護制度 심의실에서 이 法에 관한 개요에 대한 설명과 해설을 발표하였기에 이를 참고하여 이 法에 관한 해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日本 半導體칩 保護法의 構成

이 法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제1장 總則

제2장 回路配置 利用權의 設定登錄

제3장 回路配置 利用權 등

제1절 回路配置 利用權

제2절 權利侵害

제3절 補償金

제4장 指定登錄 機關

제5장 雜則

제6장 罰則

附 則

日本 半導體 칩 保護法도 다른 知的所有權 法과 마찬가지로, 半導體 集積回路의 配置設計 개발을 한者的 權利를 無體 財產權으로서 保護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無體 財產權 保護法인 特許法등과 유사한 규정이 많다.

따라서 이 法에 관한 해설은 다른 知的所有權 法과 유사한 규정에 대해서는 간략히 넘어가고, 이 法의 독자적 규정만 중점으로 설명한다.

3. 0| 法의 目的

이 法의 제1조를 보면, 이 法은 半導體 集積回路 配置設計의 적정한 이용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창설하여, 半導體 集積回路의 개발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 法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回路 配置의 적절한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回路配置의 模倣을 방지함에 의해 개발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半導體 集積回路의 이용자의 거래의 안정을 확보하는 등 回路 配置의 거래상의 Rule을 확립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回路 配置의 개발자의 權利를 無體 財產權으로 보호함에 의하여 回路 配置의 模倣을 방지하고, 또한 권리 관계의 공시, 전용 利用權 및 通常 利用權 등의 규정과 선의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을 설치함으로서, 回路 配置의 거래의 안정화 원활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와같은 목적과 더불어서 폐동을 수 없는 또 다른 목적은 美國의 半導體 칩 보호법에 대응하여 自國 半導體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美國이 半導體 칩 보호법을 제정할 때 美國은 美國의 半導體 칩 마스크워을 美國이 自國民에게 보호해 주는 것과 동등한 보호를 해주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美國이 自國內에서 半導體 칩 보호를 해 주겠다는 상호주의 조항을 둘에 따라 상당한 半導體 제품을 異國에 수출하는 日本으로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半導體 칩 보호법을 조기에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4. 語句의 定義

이 法 제2조는, 이 法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해석상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半導體 回路”, “回路 配置” 및 回路配置에 관한 “이용”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 法의 보호 대상인 “回路 配置”에 대해서는 “半導體集積回路에 있어서 回路素子 및 이것들을 접속하는 도선의 配置”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配置에는 平面的인 것에 한하지 않고 立體的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回路配置에 관한 “이용”에 대해서는,

- ① 回路 配置를 사용하여 半導體 集積回路를 제조하는 행위 및,
 - ② 回路 配置를 사용하여 제조한 半導體 集積回路(당해 半導體 集積回路를 결합한 물품을 포함한다)를 양도하거나 임대하거나, 혹은 양도 및 임대를 위해 전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로 하고 있다.
- “이용”的 범위에 사용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로서는,

- ① 半導體 集積回路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機械등에 결합하여 그 일부로서 사용되는 것이

기 때문에 그 機械 전부에 접유하는 중요도가 적음.

- ② 半導體 集積回路의 사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 상업적 관행은 없고, “판매만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행해지고 있음.
- ③ 사용은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므로 유저 입장에서는 언제 사용 증거 청구를 받을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어 거래의 안정을 해침.
- ④ 權利者의 입장에서 최종 유저에까지 權利가 미치지 않더라도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함.

등을 들 수 있다.

5. 回路 配置 利用權의 設定登録

回路 配置의 創作을 한 者 또는 그 승계인(이하 “創作者등”이라 한다)은 그 回路 配置에 관한 回路配置 利用權의 設定登録(이하 “設定登録”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3조)

設定登録을 받으려 하는 者는,

- ① 申請書
- ② 回路配置를 기재한 圖面 또는 回路配置를 표시한 사진
- ③ 申請者가 “創作者등”인 것에 대한 說明書등의 자료

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

設定登録은, 申請日로부터 2년 이상 이전에 回路配置의 “創作者등” 또는 그 허락을 받은者が 設定登録申請을 하려는 回路配置를 업으로서 사용하여 제조한 半導體 集積回路(半導體 集積回路를 결합한 물품을 포함한다)를 양도, 임대, 양도 및 임대를 위한 전시, 또는 수입행위를 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제6조). 이 규정은 回路 配置의 創作者와 利用者の 이익의 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登錄制度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回路 配置 創作者는 스스로 개발한 回路 配置에 대하여 최대한 2년간의 상업적 이용을 통해서 技術的 견지뿐만 아니라 시장성, 상품가치 등의 경쟁적 견지까지의 효과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성과 상품가치가 높은 回路配置만을 登錄申請 할 수 있으므로 登錄 비용이 절약될 수 있다.

한편 權利者 이외의 사람은, 특히 權利者와 경쟁판계에 있는 타 기업은 상품으로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半導體 集積回路 가운데 상업적으로 이용된지 2년이 지나도록 登錄申請을 하지 않은 것을 공적인 차산으로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半導體 集積回路의 이용이 촉진되어, 技術開發 및 산업의 발

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設定登録의申請에 있어서申請書 및 첨부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뿐만 아니라 다음의 경우에는 設定登録申請은 각하된다. (제7조, 제8조)

- ① 申請者가 創作者등이 아닌 경우.
- ② 共同申請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 ③ 回路配置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設定登録을 받을 수 없는 것인 경우.
- ④ 申請書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이 法에 있어서 特許法등과 같이 실질적인 審査를 하지 않고 이와같이 형식적인 審査主義를 채용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實質審查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가 되는 模倣의 유무에 대해서는, 진정한 權利者와 模倣者간의 대립구조에 의해 判斷을 해야 하므로 사전에 實質審查를 행하는 것이 불가능함.
- ② 實質審查를 하지 않더라도

i) 特許와는 달리, 동일 回路配置의 登錄은 허용되지만, 模倣者와의 登錄으로 인한 악영향(진정한 權利者에게 미치는)은 비교적 적음

ii) 模倣者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소송에 의해서 모방을 증명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특별한 避害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음.

法人등에 고용되어 업무에 종사하는者が 職務上創作을 한 回路配置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法人등을 回路配置의 創作者로 간주한다. (제5조)

이 규정은 著作權法 제15조와 동일한 것이다.

回路配置의 創作은 수 밀리미터(mm) 사방의 半導體 기판상에 수만에서 수십만개의 트랜지스터와 기타의 回路 小子를 어떻게 配置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작업으로서, 공장생산적이며, 미리 정해진 조건, 가능에 따라 수십명의 종업원에 의해 수억엔의 자금을法人이 부담해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法人등을 回路配置의 創作者로 하는 것이다.

6. 回路配置利用權

回路配置利用權은 設定登録에 의해 발생하고 그 존속기간은 設定登録日로부터 10년이다(제10조).

回路配置利用權은 物權의 權利로서 그 權利의 주장을 누구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권리주장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權利의 존재 자체를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고, 이 때문에 설정등록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回路配置利用權의 존속기간은 回路配置 이용권자와 일반 공중의 이익 사이에 조화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데 이 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은 이 기간동안 權利者が 개발에 들인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回路配置利用權者는 設定登録을 받은 回路配置(이하 “登録回路配置”라 한다)를 업으로서 이용하는 權利를 獨占한다”(제11조)라고 되어 있는 回路配置利用權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로서는,

- ① 타인이 創作한 回路配置의 이용
- ② 해석 또는 평가의 목적으로 登錄回路配置設計를 이용해서 半導體 集積回路를 製造하는 행위.
- ③ 回路配置利用權者, 專用利用權者 또는 通常利用權者가 登錄回路配置를 이용해서 제조한 半導體 集積回路(半導體 集積回路를 창작한 물품을 포함한다)를 양도한 때에, 그 양도가 된 半導體 集積回路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을 들수 있다. (제12조)

回路配置利用權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한 3가지 규정중에서

- ① 규정은 獨립 개발된 回路配置에 대한 것으로서, 이 法에 있어서는 각기 별개로 保護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며, 비록 동일한 回路配置인 경우라도 獨자적으로 개발된 것이던, 각각 별개로 設定登録을 받을 수 있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設定登録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하더라도 그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權利侵害로서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이 法에 있어서 하나의 回路配置에 대한 權利者에게 特許法처럼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獨립 개발된 回路配置는 각기 保護된다고 한 것은, 이 法의 취지가 타인의 回路配置의 모방을 방지 하므로써 回路配置의 創作者의 투자 의욕이 손상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 ② 의 규정은, 半導體 集積回路 산업에 있어서 정당한 관행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적절한 위치를 부여한 것이다.

③ 의 규정은, 特許法의 해석으로서 判例, 學說에 의해 확립되어 있는 “용진설(用盡說)”과 같은 취지의 것이다.

登錄回路配置設計와 타인의 特許發明등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回路配置利用權者, 專用利用權者 또는 通常利用權者는 登錄回路配置의 이용이 타인의

特許發明 또는 登錄 實用新案의 실시에 해당하는 때는 업으로서 登錄 回路 配置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제13조)

7. 權利侵害

回路 配置 利用權의 權利 侵害에 대해서는, 特許法과 마찬가지로, 日本 民法 제709조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 및 침해 정지 또는 예방을 위한 “(差止請求: 어떤 위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청구)”를 행할 수 있다(제22조).

또한 간접 침해의 규정, 즉 전적으로 登錄 回路 配置를 摸倣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物을 業으로서 生產하거나, 貸與하거나, 讓渡 혹은 貸與의 목적으로 展示하거나,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權利侵害로 보는 규정도 特許法과 동일하다(제23조).

權利侵害 규정에 있어서, 半導體 集積回路를 구입했을 때에 그 半導體 集積回路가 불법으로 摠倣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또한 알지 못한 사실에 대한 과실이 없는 者 (“선의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제24조).

이 특례 규정은, 半導體 集積回路가 각종의 제품에 결합되어 널리 유통된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設置된 것이다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의자에 의한 摠倣品의 양도등은 權利侵害가 아닌 것으로 봄.

② 선의자가 摊倣사실을 摊倣品의 양도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利用料 상당액의 덧가만 지불하면 됨.

③ 덧가의 지불에 의해서 回路 配置 利用權은 소멸 토톤 함.

이와같은 선의자 保護를 위한 특례규정으로 인하여, 선의자가 權利者로부터 느닷없이 “차지청구 (침해금지 청구)”를 받게 되는 일은 없다.

8. 補償金

設定登錄 전에 法으로서 양도등이 행해진 回路 配置가 設定登錄 전에 摊倣되어 이용된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는 權利侵害가 되지는 않지만, 設定登錄을 받은 후에 權利者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補償金을 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7조).

9. 指定登錄 機關

이 法에 있어서 登錄 사무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대로 한다면 국가가 행해야 할 行政事務이다. 그렇지만 국가가 행해야 할 行政事務은 너무나 많으므로 그 모두를 국가가 스스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行政事務중에 사실 확인 적이고 판단요소가 적은 정형적인 것에 대해서는, 特別認可 法人이나 民法 法人등에 그 사무를 행하도록 함으로써, 行政기구의 거대화를 방지하고, 민간 활동을 이용함에 의한 行政 효율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예가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 法에 있어서도, 사실확인적이며 판단요소가 적은 정형적인 사무인 登錄事務를 통상 산업대신이 지정하는 者 (“指定登錄機關”)에게 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제28조).

더우기 指定機關의 지정에 관련해서는, 결격조항(제29조)을 정합과 동시에, 지정의 기준(제30조)을 엄격히 정해서, 공평성, 중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10. 附 則

부칙에 있어서, 경과조치로서,

- ① 이 法 施行전 2년 이내에 최초로 業으로서 양도 등이 이루어진 回路配置에 대해서는 이 法 施行후 6개월 이내에 登錄申請이 있으면, 제6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設定登錄이 가능도록 함(부칙 제2조).
- ② 이 法 施行日에 현존하는 半導體 集積回路는, 이 法 施行후 2년이내는 자유로이 양도등이 가능도록 함(부칙 제3조).

등이 마련되어 있다.

11. 맷는말

지금까지 日本 半導體 칩 保護法에 관한 日本 通常 產業省 기계정보 산업국 半導體 칩 保護制度 심의실의 해설을 살펴 보았다. 美國 半導體 칩 保護法과 비교하여 특별한 차이가 있는 점은 상호주의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과, 利用權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점 및 登錄機關의 별도 設立을 들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半導體 칩의 保護 개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日本 半導體 칩 保護法이 기본적으로는 美國 半導體 칩 保護法의 상호주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登錄機關을 별도의 민간기구에 의해서 행하도록 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의실은 상당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은 通算 產業省이立法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단일 特許廳에서 推進하였더라도 별도의 登錄機關設立 없이 特許 登錄業務에 추가해서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8>